

행정자치부

주 의 요 구

제 목 기록물 평가폐기 절차 부적정

기 관 명 해운대구

내 용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기록관은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으로 분류된 기록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소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하며, 기록관의 장은 보존기간 30년 이상의 기록물을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10년이 경과한 다음 연도 중에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제시한 일정에 따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그리고 같은 법 제27조 및 제50조의 규정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기록물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와 기록물평가심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고, 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및 제53조의 규정에 따르면 기록관의 장은 보존중인 기록물 중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에 대하여는 생산부서 의견조회, 전문요원의 심사, 기록물평가심의회 심의를 거쳐 보존기간 재책정, 폐기 또는 보류로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하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보존기간이

30년 이하인 보존 기록물의 보존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해당 기록물의 보존가치를 평가하여 보존기간을 재책정하거나 보류 또는 폐기로 구분하고, 보존기간이 준영구인 기록물에 대하여는 보존기간 기산일부터 70년 경과시 해당 기록물의 보존가치를 평가하여 보존기간을 재책정하거나 보류 또는 폐기로 구분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기록관에서 보존하고 있는 기록물 중 보존기간 30년, 준영구, 영구인 기록물은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하고, 기록관은 보존기간 10년 이하인 기록물 중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에 대하여만 절차에 따라 보존기간 재책정, 폐기 또는 보류로 구분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기록물의 보존기간별 책정기준」에 따르면 관계법령에 따라 10년 이상 30년 미만의 기간 동안 민·형사상 또는 행정상의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기록물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10년 이상 30년 미만의 기간 동안 보존하도록 규정한 기록물은 보존기간을 30년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82조에 따른 ‘호적접수장’은 그 보존기간을 27년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기준에 따라 보존기간을 30년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과)에서는 2014년 기록물 평가·폐기업무를 추진하면서 기록관에서 보존하고 있던 1986년 생산된 보존기간 27년인 기록물 ‘호적사건접수장’ 1권을 기록물평가심의회에 상정하여 폐기의견에 따라 폐기 대상으로 분류해 서고에 별도 보관하여 왔다.

조치할 사항 해운대구청장은

[주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관에서 보존하고 있는 기록물 중 보존기간 30년, 준영구, 영구인 기록물은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